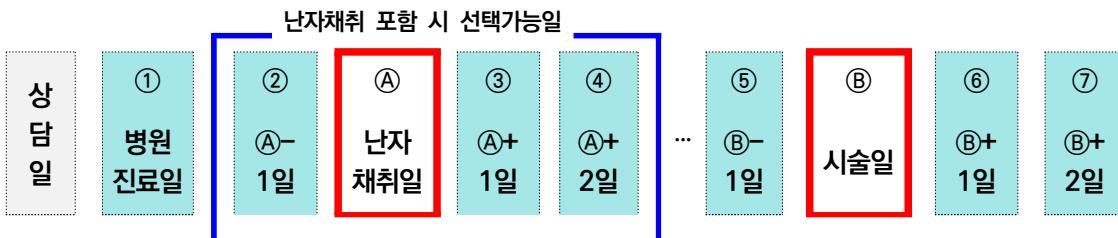


-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,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,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,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,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
※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

※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

〈 난임치료시술별 휴가사용일 〉



- ▶ 인공수정 시술 시: ⑧ 1일 부여, ①, ⑤~⑦ 중 1일 선택 가능
 - ▶ 동결 보존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: ⑧ 1일 부여, ①, ⑤~⑦ 중 2일 선택 가능
 - ▶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: ④ ⑧ 각 1일 부여, ①~⑦ 중 2일 선택 가능

※ 단, 초음파 검사, 과배란 유도 등 난임치료시술에 수반되는 병원진료만 사용 가능(상담일 사용불가)

※ 단, 초음파 검사, 과배란 유도 등 난임치료시술에 수반되는 병원진료만 사용 가능(상담일 사용불가)

(2) 남성교원: 정자채취일 당일

라) 여성보건휴가

- (1) 여성교원은 매 생리기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(무급)를 받을 수 있음

마) 모성보호 시간

- (1) 임신 중인 여성교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

- 인력운영 상황,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
 - 학교의 장은 인력운영 상황,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
 -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(육아시간)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
 -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

※ 예) 日 8시간 근무 기준

- 모성보호시간 2시간, 연가 3시간 사용시 →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
 - 모성보호시간 2시간, 병가 4시간 사용시 → 연가 2시간,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

- (2)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(진단서, 임시확인서, 산모수첩 등)으로 확인(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)

※ 늦게 출근하거나,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

- (3)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